

#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1) 추진근거
    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  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   - 다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    - 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 - 2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, 허리기업 선정
- 2) 기업 간담회 실시, 허리기업별 전담PM 매칭, 과제 추진현황 점검
- 3) 사업 추진결과 검토, 지원기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지원 연계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2.~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8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800	160	80	56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자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### 3. 부서 의견

-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## 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

제8조(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)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창업보육센터, 시제품생산공장, 산업기술정보센터, 지식재산센터, 국방벤처센터,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,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
2.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
3.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

4. 나노산업, 첨단산업, 신성장동력산업,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관련사업 추진)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#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위탁 시 사업  
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2025년 참여인원의 2025년 1월 기준 대표단가의 평균값  
으로 산정하였음

나. 사업비는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세출	○ 인건비	160	160	160	160	160
○ 간접비		80	80	80	80	80	400
○ 사업비		560	560	560	560	560	2,800
계		800	800	800	800	800	4,000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국비	-	-	-	-	-	-
도비	-	-	-	-	-	-	
시비	800	800	800	800	800	4,000	
민간	-	-	-	-	-	-	
기타	-	-	-	-	-	-	
합계	800	800	800	800	800	4,000	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박지나(☎480-613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800,000	
인 건 비	160,000	· 참여직원 인건비 26,666천원×6명 = 160,000천원 ※ 2025년 1월 대표단가(차등)×참여기간(11개월)×참여율(차등)
간 접 비	80,000	·기관 공통경비 80,000천원
사 업 비	560,000	· 기업성장지원비 520,000천원 · 전문가활용비, 컨설팅 지원비 등 19,700천원 · 여비, 사무용품비 등 4,300천원 · 연구수당 16,000천원

소 관 부 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공 민 정
	담 당 자	박 지 나 (480-6132)